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9. 1.

행 정 재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장 영 교

1. 제안요지

가. 의안번호: 제1794호

나. 제 출 자: 성동구청장

다. 제출일자: 2022. 8. 17.

라. 회부일자: 2022. 8. 23.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아닌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신설(안 제4조)

나. 행정재산 용도변경·폐지 사유의 법률상향(법 제11조)에 따라 삭제된 '시행령 제8조' 인용내용 삭제(안 제6조)

다.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안 제20조부터 안 제24조까지, 안 제32조)

라. 인용 법령의 제·개정 내용 반영(안 제32조, 안 제38조, 안 제88조)

마.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신설(안 제89조)

바.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 의무시설 면적기준 신설(안 별표 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2. 7. 14. ~ 2022. 8.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 검토의견

가. 제안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민간위원의 임기에 대해 2년으로 한다는 규정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 안 제6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시행령 제8조가 삭제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20조부터 안 제24조까지와 안 제32조에서는 「국유재산법」과 용어 통일성을 위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의 정의를 변경한 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 안 제20조의2제3호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조문 이동(제13조제3항제20호 ⇨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32조와 안 제38조는 「외국인투자촉진법」,안 제88조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 안 제89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위임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 안 제46조 관련 별표1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시행(2022.8.18.)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

영하여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의무시설 면적 확보를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 및 연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 연임 규정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근거법령 인용 조항을 개정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 및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적정한 개정안이라 사료됨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근로자 휴게시설을 의무시설로 설치하는 것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청소근로자의 인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조치이며, 구청사뿐만 아니라 구립 공공시설 청소근로자 휴게시설에도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관계법규 >

붙임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붙임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